

#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166호
2. 발 의 자 : 문장길 의원
3. 발의일자 : 2021. 2. 5.
4. 회부일자 : 2021. 2. 9.

## II 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 관내 여자 중·고등학교의 학칙(학교규정)을 살펴보면 학생의 복장을 규정함에 있어 속옷의 색과 무늬,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여,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.
- 또한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서는 학칙 제·개정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, 학칙 제·개정 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장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음.
- 이에,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에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, 학칙으로 속옷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 사항을 방지하고자 함.

### Ⅲ. 주요내용

- 학교규칙으로 복장을 제한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삭제함(안 제12조 제2항).

### 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
2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3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문장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66호로 발의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학생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학생인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-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26일에 제정되었습니다.
- 한편 동 조례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,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도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sup>1)</sup>
- 이는 동 조례가 학생의 개성 실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복장과 두발을 학생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,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제한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<sup>2)</sup>
- 그러나 현재 일부학교에서는 교복 그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교복 착용과 동반되는 속옷, 양말,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규칙으로 규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.<sup>3)</sup>

1) 제12조(개성을 실현할 권리) ① 학생은 복장,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.

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,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.

2) 중·고등학교 교복 착용 비율(교육부 조사) : 2018학년도 98.3%, 2019학년도 97.6%

○ 예를 들어 서울시 관내 여자 중·고등학교의 학교규칙을 살펴보면 중학교는 44교 중 9교(20.5%), 고등학교는 85교 중 22교(25.9%)가 속옷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[붙임1].

규제 정도는 단순히 속옷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부터 속옷 착용 의무와 색상까지 규정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과도한 인권 침해로 판단됩니다.

○ 이러한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이 학교규칙을 통한 복장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.

○ 참고로 교육부는 지난 2020년 2월 25일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을 개정하여 학교규칙 기재 사항에서 ‘두발·복장 등 용모,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,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바 있습니다[붙임2].

○ 한편,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‘복장’을 ‘교복’으로 한정하여 “교복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제4항4)의 절차에 따라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”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2275, 2021.2.17.).

○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이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동 조례에서 이미 ‘학생의 의사에 반하여’ 복장·두발 등을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

---

3) 보도자료 : 두발·복장·속옷까지 규제...“학생 인권 침해”(KBS NEWS, 2020.12.11.)

4) 제19조(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)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, 토론회,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.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·개정안에 제12조,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점을 고려한다면,

굳이 서울시교육청의 의견과 같이 교복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조례 주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[붙임1]

[표1] 서울시 관내 여자 중학교 학교규칙 중 속옷 관련 부분

연번	학교명	학교규칙
1	명덕여중	- 교복을 입었을 때 속옷(블라우스)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.
2	보성여중	- 하복 착용 시 흰색 속옷 또는 흰색 면 티를 착용하되, 속옷이 교복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.
3	봉영여중	- 반드시 속옷을 입는다.
4	상일여중	- 하복 착용 시 속옷 또는 티셔츠를 착용한다.(단 민무늬, 무채색으로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하며, 티셔츠 소매가 교복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.)
5	세화여중	- 상의 안에는 속옷을 반드시 입는다.
6	영파여중	- 품과 길이는 안쪽에 니트웨어를 입어도 단추를 넉넉히 잠글 수 있도록 하며 속옷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를 유지할 것.
7	예일여중	- 야외 행사시 사복은 단정하고 검소하며 현란하지 않은 복장으로 하되, 찢어진 옷, 배꼽티 등 신체 노출이 심한 옷, 잠옷 및 속옷 분위기가 나는 옷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.
8	정원여중	- 여학생 재킷의 품은 니트웨어를 입어도 단추를 넉넉히 잠글 수 있도록 하며, 길이는 속옷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를 유지할 것. - 속옷은 반드시 갖추어 입는다. (여름에는 러닝셔츠를 반드시 입는다).
9	정화여중	- 지정된 블라우스와 흰색 계열의 속옷을 입는다.

**[표2] 서울시 관내 여자 고등학교 학교규칙 중 속옷 관련 부분**

연번	학교명	학교규칙
1	경희여고	- 교복 상의는 속옷이 보이지 않게 품과 길이를 넉넉히 하여 단정하게 입는다.
2	대일관광고	- 하복 착용 시 반드시 속옷을 착용하여 비치지 않도록 한다.
3	대진여고	-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. 단, 속옷이 블라우스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입는다.
4	동덕여고	- 하복 착용 시 속옷(흰색)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. -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 (하복) 별점 부과
5	동명생활경영고	- 하복 착용 시 속옷을 갖추어 입어야 한다.
6	동명여고	- 하복 착용 시 속옷(흰색)은 꼭 입는다. 또 하복 속에 흰색 반팔 티 착용을 허용하나 흰색 반팔 티가 절대 교복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.
7	미림여자 정보과학고	- 하복 착용 시 상의 블라우스 안에는 흰색 또는 살구색의 내의를 착용하여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- 자켓의 품과 길이는 안쪽에 니트웨어를 입을 수 있어도 단추를 넉넉히 잠글 수 있도록 하며, 속옷이나 블라우스가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를 유지할 것.
8	서울여자상업고	- 속옷을 단정하고 청결하게 입으며 속옷 대응으로 티셔츠(민소매 포함)를 입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9	서울의료보건고	- 교복 속에 비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속옷을 착용한다.
10	성신여고	- 블라우스 길이 : 팔을 들어서 속옷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.
11	성심여고	- 블라우스 길이 : 팔을 들어서 속옷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.
12	승의여고	- 하복 생활복 안에 속옷을 입을 경우 흰색 또는 검정색 민무늬 속옷만 허용한다.
13	영신간호 비즈니스고	- 교복 안에 티 또는 속옷을 반드시 착용하며 블라우스 단추를 채운다.
14	영신여고	-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및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한다.
15	예일디자인고	- 여름철 상의(교복, 생활복) 안에 속옷을 대신할 무채색 면 티는 허용되되 상의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하며, 교내에서 시중의 T-셔츠만 착용하고 활동할 수 없음.
16	예일여고	- 하복 착용 시 흰색 속옷을 반드시 착용한다.
17	은광여고	- 속옷 착용 위반 시 별점 부과
18	정의여고	- 공히 속옷은 꼭 갖추어 입는다.
19	정화여상	- 하절기 하복 착용 시 반드시 면소재의 속옷을 갖추어 입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금한다. 1.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속옷의 착용을 금한다.
20	진선여고	- 교복 착용 순서 : 속옷을 먼저 착용 - 재킷의 품과 길이는 니트웨어를 입어도 단추를 넉넉히 잠글 수 있도록 하며 속옷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를 유지할 것
21	해성국제 컨벤션고	- 교복 상의(동·하복 블라우스) 밖으로 속옷이나 티셔츠를 내놓는 경우 별점 부과
22	해성여고	- 교복상의(블라우스, 생활복 포함) 밖으로 속옷이나 티셔츠를 나오지 않게 한다.

[붙임2]

###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[시행 2020. 2. 25.] [대통령령 제30439호, 2020. 2. 25., 일부개정]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)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략) 7. 학생 포상, 징계, <u>징계 외의 지도방법, 두발·복장 등 용모,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,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·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</u>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. ~ 10. (생략) ② 삭제 ③·④ (생략)	제9조(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) ①---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 <u>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</u> ----- ----- ----- <u>교육·연구 활동 보호</u> ----- ----- 8. ~ 10. (현행과 같음) 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

# 관계 법령

## 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20. 10. 20.] [법률 제17496호, 2020. 10. 20., 일부개정]

**제8조(학교 규칙)** ① 학교의 장(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)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.

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·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##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[시행 2021. 1. 1.] [대통령령 제31349호, 2020. 12. 31., 타법개정]

**제9조(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)**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. <개정 2005. 1. 29., 2011. 3. 18., 2012. 4. 20., 2012. 10. 29., 2020. 2. 25.>

1. 수업연한·학년·학기 및 휴업일
2.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
3. 교과·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
4. 입학·재입학·편입학·전학·휴학·퇴학·수료 및 졸업
5. 조기진급,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
6. 수업료·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
7. 학생 포상, 징계,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·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
8.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
9. 학칙개정절차
10.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

② 삭제 <2005. 1. 29.>

③ 다음 각 호의 학교·학과·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2. 15.>

1.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
2.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
3.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
4.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
5. 기숙사

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의견을 듣고,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3. 18., 2012. 4. 20., 2013. 2. 15.>

[제목개정 2011. 3. 18.]

**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**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3. 18.>

1. 학교내의 봉사
2. 사회봉사
3. 특별교육이수
4.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
5. 퇴학처분

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3. 18.>

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·운영하고,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·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18.>

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18.>

1.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2.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
3.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

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3. 18.>

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,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18.>

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·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, 도구,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1. 3. 18.>